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35

발의연월일: 2021. 11. 4.

발 의 자: 김수흥・김주영・송옥주

안호영 · 김진표 · 윤준병

윤후덕 • 고용진 • 아수진॥

이용호 · 김두관 · 양정숙

이원욱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,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하여 처벌규정에 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와 관련하여 현행 「공인회계사법」, 「변리사법」 등 다른 전문 자격 관련 법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 하여 몰수·추징 규정을 두어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도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2 신 설).

법률 제 호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몰수·추징) 제29조제1항제1호,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이익은 몰수한다.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0조의2(몰수·추징) 제29조제1
	항제1호, 제2항제1호 및 제4호
	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
	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
	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.
	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
	그 가액을 추징한다.